

目 次

1. 平昌郡衛生環境事業所設置條例案	21
2. 平昌郡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24
3. 珍富圖書館建立費支援에關한建議案	38
4. 1994年度 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同意案	42
5. '94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	53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8 호
----------	---------

제출년월일 : 1994. 5. .
제 출 자 : 평창군수 이 석



1. 제안이유

-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01210-418('94. 3. 31)

2. 주요골자

-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 신설
 - ⇒ 기존 환경보호과 소속의 위생처리장을 군사업소로 승격
- 제정내용
 - 소 장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노른리 125-3번지
 - 관장업무
 -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 무 원 : 별도 정원규칙으로 제정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평창군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25-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연구발전
3.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대행)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地方自治法(1988.4.6) (法律第4004號全文改正)

改正 1989.12.30 法律第4162號
1990.12.31 法律第4310號
1991.5.23 法律第4367號
1991.12.31 法律第4464號

第105條(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제12444호전문개정)

개정 1990.2.13 대통령령제12928호
1991.4.1 대통령령제13336호
1991.7.1 대통령령제13414호
1991.7.15 대통령령제13427호(지방자치단체외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1992.2.15 대통령령제13586호
1992.9.17 대통령령제13727호

제105조(사업소·출장소와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1. 원거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사무관 분장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한 것

③법 제105조 또는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등에게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관할 구역외의 자치구가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관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1.7.1)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난 '93. 8.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제13958호)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감면·조정·부과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점용물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3조·별표1)
- 다.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함. (안 제4조·별표2)
-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과 그 비율을 정함. (안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군수가 정하는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전액면제
 - 재해 기타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함.
 - 전기공급·전기통신시설, 송유관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50% 감액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함.
-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함.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농어촌도로(이하"도로"라한다)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44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도로법 제44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 의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도로법 제44조제2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유사한 것	전 주		1 개	1 년	600
	전주와 유사한것				900
	공 중 전 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것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0.05 를곱한금액
2. 수도관·하수도관·가수스관·송유관 기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가수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관·통신시설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 년	1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3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6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9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2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500
		직경 1 m 초과			3,000
	기타의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 년	2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4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9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1,3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8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2,250
		직경 1 m 초과			4,500

3. 광고탑·광고판·간판 ·시설안내표지판·현수막·아취기타 이와 유사한것	광고탑·광고판·간판	일시 설치한것 (1월 미만점용)	표시면적 1 m ²	1 일	100
		기 타	표시면적 1 m ²	1 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 개	1 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 행사 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 1 m ²	1 일	50
		기 타 의 용 도			1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년	30,000
		기 타	1 m ²		15,0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자승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시설	건 축 물	1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m ²	1 년
2 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3 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 금액		
4 층이상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m ²	1 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기 타이와 유사 한것	건 축 물	1 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m ²	1 년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 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 금액
		3 층이상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비스표 판매대·구두수선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관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100
	기타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제1호내지 제8호의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1,445원=1,400원, 1995원=1,950원)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산 출 점 용 료 의 증 가 율	남 부 할 점 용 료
10 퍼센트이상 20 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 퍼센트이상 50 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퍼센트이상 100 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퍼센트이상 200 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퍼센트이상 500 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관 계 법 령 발 취

□. 도 로 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점용장소·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기타 이와유사한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
3.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것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
8.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이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8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의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㉔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㉕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건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제26조(공익을 위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㉔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㉕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㉖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는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 ㉗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 를 위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진부도서관건립비지원에관한건의안

의안 번호	169
----------	-----

발의년월일 : 1994년 5 월 일

발 의 자 : 곽문춘 의원 외

6 인

1. 주 문

우리 평창군은 1,460km² 광활한 면적에 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군청소재지인 평창읍은 최남단에 치우쳐져 있어, 각종 정부혜택을 고루 받을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는 군청소재지에 286명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학생을 주축으로한 평창,미탄,방림,대화지역 주민들까지 많은 군민이 이용함으로써,군민정서함양및 학력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북부4개 면 지역은 이러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등 주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진부,도암지역에 문화공간이 전혀 없어 가뜰이나 UR여파로 실의에 차있는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은 민자유치등을 통한 관광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빈곤은 농촌지역의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면학분위기 조성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부지역에 독서실과 연계한 다용도 도서관이 건립될시 이지역 주민과 2,400여명 학생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부지역은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상의 개발 핵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향후 관광문화 도시 건설에 대비함은 물론 인근지역과 연계된 문화공간의 확보는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되어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창군민의 뜻에 따라 금년에 평창교육청에서 총사업비 6억7천만원을 투자 연건평 280평 규모의 진부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열악한 지역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6억7천만원중 2억7천만원은 어려우나 지방비로 확보가 가능하나 잔여 사업비 4억원을 충당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 전체의원은 6만군민의 간절한 여망의 뜻을 모아 진부 도서관건립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오니, 군민의 바램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선처를 바랍니다.

2. 제안이유

군민의 정서함양과 강원도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억7천만원을 투자 연건평 280평 규모의 진부도서관 건립 계획을 평창교육청에서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중 2억7천만원은 지방비로 충당이 가능하나 잔여 사업비 4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진부도서관 건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여 줄것을 건의하고자 하는것임.

珍富圖書館建立費支援에關한建議文

우리 平昌郡은 1,460km² 광활한 面積에 地域이 散在되어 있으며, 郡廳所在地인 平昌邑은 최남단에 치우쳐져 있어, 各種 政府惠澤을 고루 받을수 없는 地域的 特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92年度에는 郡廳所在地에 286坪 規模의 圖書館을 建立하여 學生을 主軸으로한 平昌, 美灘, 芳林, 大和地域 住民들까지 많은 郡民이 利用함으로써, 郡民 情緒涵養 및 學力 提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北部4個 面地域은 이러한 文化空間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五臺山國立公園等 主要 觀光資源을 갖추고있는 珍富, 道岩地域에 文化空間이 전혀 없어 가뜩이나 UR여파로 실의에 차있는 이 地域 住民과 學生들의 士氣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地域은 民資誘致등을 통한 관광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文化施設의 빈곤은 農村地域의 疎外感을 가중시키는 큰 要因으로 擡頭되고 있어, 이를 解消하기 위해선 積極的인 勉學雰圍氣 造成및 地域住民의 情緒涵養을 위한 文化施設 確保가 절실히 要求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珍富地域에 讀書室과 연계한 다용도 圖書館이 건립될시 이 地域 住民과 2,400여명 學生의 士氣振作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珍富地域은 江原道 綜合開發計劃上의 開發 核心地域으로 決定되어 있어, 向後 觀光文化 都市 建設에 對備함은 물론 隣近地域과 連繫된 文化空間의 確保는 地域文化의 구심점이 되어 農村定着 意慾을 鼓吹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것입니다.

이러한 平昌郡民의 뜻에 따라 今年에 平昌教育廳에서 總事業費 6억7천만원을 投資 延建坪 280坪 規模의 珍富 圖書館 建立計劃을 樹立 推進中에 있으나, 열악한 地方財政 形便으로 인하여 事業費 確保가 극히 어려운 實情에 있습니다.

따라서 總事業費 6억7천만원중 2억7천만원은 어려우나마 地方費로 確保가 가능하나 殘與 事業費 4억원을 充當할 財源을 確保할 수 없어, 이에 우리 平昌郡議會 全體議員은 6萬 郡民의 懇切한 여망의 뜻을 모아 珍富 圖書館建立에 必要한 不足 事業費 4억원을 支援하여 주실것을 建議드리오니, 郡民의 바램이 成就될 수 있도록 倍前의 善處를 바랍니다.

1994年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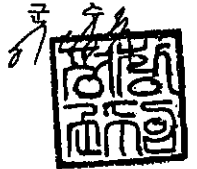
平昌郡議會議員 一同

1994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년월일 : 1994. 5. .

제출자 : 평창군



1. 제안이유

1993. 12. 17. 평창군의회에서 동의의결된 1994.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동 변경계획안의 동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함.

2. 주요골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집행하여야할 취득·처분재산은 모두 37필 69,261㎡로서 취득은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지 3개소 6필 1,459㎡이고, 교환은 2건 21필 65,918㎡인데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일산업 목초지 대부재산과 평창읍 의용소방대 부지 및 건물을 각각 교환에 의거 취득·처분하는 것이며, 매각은 개인들이 사유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 8필 1,563㎡이고, 철거는 진부면 구 의용소방대 건물 1동으로서 평창경찰서 진부지서 신축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철거요자함.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제35조

나.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및 동시행규칙제29조

총괄표 (7-1)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합계			94 당 초			94, 1차 변경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4	74,160	682,735	17	31,744	419,995	17	42,416	262,740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기타									
	1)	토지	20	14,053	313,534	14	12,594	217,894	6	1,459	95,640
	2)	토지	14	60,107	369,201	3	19,150	202,101	11	40,957	167,100
독	기타	토지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분	계	토지	36	46,859	775,563	18	20,335	540,043	18	26,524	235,520
		건물	5	1,391	71,105	3	1,070	32,180	2	321	38,925
		기타									
	4)	토지	21	3,244	344,684	13	1,681	337,604	8	1,563	7,080
	5)	토지	15	43,615	430,879	5	18,654	202,439	10	24,961	228,440
대부	교매각 (철거)	건물	5	1,391	71,105	3	1,070	32,180	2	321	38,925
		기타									
대부		토지									
		건물									
		기타									

94년도 취득 재산 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주소	소유자 성명
	지목	소 재 지	수량					
1	전	방림 방림리 1287-2	260	20,800	하반기	방림 보건지소 부지	방림 방림리 1300	강대길
2	"	" 1287-3	245	19,600	"	"	"	"
3	"	" 1287-7	181	14,480	"	"	"	"
4	대	" 1288-3	147	11,760	"	"	"	"
5	전	봉평 유포리 75-3	330	2,000	"	동매 보건진료 소 부지	봉평 유포리 401	마기철
6	"	봉평 면은리 799-3	296	27,000	"	면은 보건진료 소 부지	경북 포하시 중앙동 60	추경호
계	토지 건물 기타	6필	1,459	95,640				

94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 (7 - 3)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 환 대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사유	교 환 대상자
	구 분	지 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교환취득	임야	평창 중부 산66-6	11,603	11,603	27,847	하반기	종합문화 예술회관 부지	한일산 업(주)
2	"	"	" 산66-12	8,650	8,650	20,760	"	"	"
3	"	"	" 산66-13	1,936	1,936	5,034	"	"	"
4	"	"	" 산66-14	2,291	2,291	6,185	"	"	"
5	"	답	평창 여만 357-11	4,206	4,206	27,339	"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지	강원도
6	"	"	" 357-12	2,887	2,887	18,765	"	"	"
7	"	"	" 357-13	3,117	3,117	20,261	"	"	"
8	"	"	" 357-31	2,039	2,039	13,253	"	"	"
9	"	"	" 357-15	3,275	3,275	21,288	"	"	"
10	"	"	" 357-19	790	790	5,135	"	"	"
11	"	"	" 357-35	163	163	1,059	"	"	"
계	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11필지		40,957	116,926			

94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 (7 - 3)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 환 대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사유	교 환 대상자
	구 분	지 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교환처분	대지	평창 중리 341-1	1,931	495	74,250	하반기	지역농업 개발센터 부지확보 처분	평창 군수
2	"	건물	"	192	192	28,837	"	"	"
3	"	목장 용지	도암 형계 464	5,322	5,322	30,867	"	중합문화 예술회관 부지확보 처분	"
4	"	"	465	2,631	2,631	19,733	"	"	"
5	"	"	466	202	202	1,515	"	"	"
6	"	"	467	575	575	4,321	"	"	"
7	"	"	468	5,709	5,709	33,113	"	"	"
8	"	"	469	192	192	1,440	"	"	"
9	"	"	470	2,661	2,661	19,957	"	"	"
10	"	"	471	3,273	3,273	20,619	"	"	"
11	"	"	472	3,901	3,901	22,625	"	"	"
계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10필지 1동		24,961 192	228,440 28,837			

9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1	대	평창 다수 336	361	361	1,516	하반기	지방재정법제 95조2항4호	평창 다수리 이 경 호
2	"	대화 대화 858-5	86	86	2,648	"	"	대화 대화리 이 용 우
3	전	봉평 덕거 388-7	339	339	885	"	"	봉평 덕거 893 주 태 원
4	"	" 388-8	208	208	544	"	"	봉평 덕거리 주 태 환
5	"	" 388-9	127	127	332	"	"	봉평 덕거리 배 진 역
6	"	" 388-10	127	127	332	"	"	봉평 덕거리 민 욱 남
7	"	" 388-12	159	159	415	"	"	" 주 태 윤
8	"	" 388-13	156	156	408	"	"	" 주 영 권
계	토지 건물 기타	8필지		1,563	7,080			

94년도 철거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철거대상 수 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철거사유	철거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1	건물	진부하진부 131-1	129	129	10,088	상반기	건물노후 및 진부지서 신 축부지 확보	평 창 군 수
계	토지 건물 기타	1동		129	10,088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5. 基本財産 또는 積立金の 設置·管理 및 處分
6. 重要財産의 取得·處分

[지방재정법]

(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豫算과 事業豫定에 따라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管理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29조(고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잉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

평창군이 일반회계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199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신규사업]

○ 일반회계

. 취 득

(단위 : m²,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계	6필 / 1,459	95,640	
① 방림면 보건지소부지	4필 / 833	66,640	
② 동매보건진료소부지	1필 / 330	2,000	
③ 면은보건진료소부지	1필 / 296	27,000	

. 교 환

(단위 : m²,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 상호교환			
. 취득(사유지)	11필 / 40,957	116,926	
. 처분(군유지)	10필 / 24,961	228,440	
	1동(건물)/192	28,337	

. 매 각

(단위 : m²,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① 건물점유 소규모 재산 매각	8필 / 1,563	7,080	

. 철 거

(단위 : m',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① 건물노후및 진부지서 신축부지 확보	1동(건물)/129	10,088	

'94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계획 및 결과)

'94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평 창 군 의 회

목 차

<input type="checkbox"/> 기본 계획	56
<input type="checkbox"/> 세부운영계획	58
<input type="checkbox"/> 집행기관 협조사항	60
<input type="checkbox"/> 주요사업조서	61
<input type="checkbox"/> '94군정주요사업증확인대상사업(1)	63
<input type="checkbox"/> 주요사업장사후관리및운영사항확인대상사업(2)	71

'94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 년초 계획한 군정주요사업을 확인
 - 집행부의 적시성 있는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도모하며,
 -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정보취득의 기회를 마련코자함

□ 기본계획

- 기 간 : '93. 5. 23 ~ 6. 1(10일간)
- 대상사업 : '93 ~ '94 주요투자사업 및 사후관리사업등 142건
- 확 인 자 : 의원 8인 (사무보조 3)
- 확인반 편성
 - 총 괄 : 의 장
 - 반 원 : 부의장, 이치욱, 이상훈,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 3명

○ 확인 일정

일 자	확 인 대 상	대상건수	비 고
계	8개 읍면	142 건 (111)	사후관리 사업31건
5. 23 (월)	미 탄 면	7	
5. 24 (화)	평 창 읍	15	
5. 25 (수)	방 립 면	10	
5. 26 (목)	대 화 면	14	
5. 27 (금)	봉 평 면	5	
5. 30 (월)	용 평 면	9	
5. 31 (화)	진 부 면	11	
6. 1 (수)	도 암 면	40	

□ 세부운영계획

1. 일일시간계획

시 간			활 동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시 간		
-	09:30	-	. 읍면사무소 도착	. 개별도착
09:30	10:00	30	. 사업추진상황청취	
10:00	12:00	120	. 현지활동	. 안내:사업주관 부서
12:00	14:00	120	. 중식(현지)	. 지역주민대표 초청 (번영회장,리장 대표,새마을지도자등)
14:00	17:00	180	. 현지활동	. 안내:사업주관 부서
17:00	17:30	30	. 휴식및 간담회	
17:30			. 귀 가	

2. 현지활동계획

-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청취 (읍면 회의실)
- 군및 읍면 주요사업(시책)조서에 의거 현지확인및 관련실무자 의견청취
- 조서에 의한 정실시공여부 점검및 주민여론 청취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및 운영실태 확인
- 사업장별 문제점및 개선방안 도출분석

3. 기타필요사항

가. 현지활동 자료 준비

- 대상사업 : 별첨 대상사업목록에 의한 전사업(142건)
- 자료작성 :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주요사업조서 작성 (읍면사업포함)
- 자료제공 : '94. 5. 20일한

나. 현지활동차량 확보 계획

- 읍면도착 ——— 개별
- 현지활동
 - 의회및 의원 소유차량 활용
 - 승용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 집행기관 쏘차 이용(사전검토)

□ 집행기관 협조사항

1. 주요사업조서 제출

- 별첨서식에 의거 대상사업별로 작성 '94. 5. 20까지 의회 사무과에 제출 (제출서식 임의조정 가능)
 - 대상사업 : 별첨목록의 전사업(투자사업 111건, 사후관리사업 31건)
 - 작성기준일 : '94. 5. 14 현재
 - 규 격 : A4복사용지 상철 (워드프로세서 작성)
 - 편 첩 : 읍면별 구분하여 표지, 목차, 군사업 읍면사업순
 - 제출 부수 : 11부 (합철 3부, 분철 8)

2. 현지안내및 사업현황설명

- 현지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 : 사업관계부서
- 기타사업과 관련된 확인자료 지참 설명
 - 설계도서, 공고, 입찰, 계약, 착공, 설계변경, 준공등, 관련자료(문서)

주요 사업 조 서

사업 명 :

사업개요

○ 위 치 : 읍면 리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천원(총사업비 : 천원)

- 국비: 도비 : 군비: 자담:

○ 시행기간 :

○ 현 공 정 :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추진상황

공사명				도급자			감독공무원		
입찰·계약사항	시행일자	년 월 일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참가자	기업체			
	설계금액	순공사비			관급사항	순공사비			
		잡비				잡비			
		계				계			
계약금액			계약방법 (일반) (지명) (수외)	계약일자	년 월 일				
설계변경	년 월 일	증감액	변경금액	<설계변경사유>					
계약내용	구분	계약상	실계	<향후계약변경전망>					
	작공								
	준공								
	변경준공								
	변경준공								
<특기사항>									

'94군정주요사업중확인대상사업(1)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평 창 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리진입로 포장공사 2. 유동리 진입로 포장공사 3. 도돈리 진입로 포장공사 4. 용암리 진입로 포장공사 5. 다수리 진입로 포장공사 6. 위생처리장 방류관설치공사 7. 권역별 시설재배(향동) 8. 양수장 모터 펌프교체(용항리) 9. 임하교 가설 10. 중리 도수로 설치 11. 노른 - 지동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12. 평창상수도 배수관확장 및 기존시설관리 계획 13. 평창하수도 정비사업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평창읍	14. 상리교 가설 15. 입탄리 진입로 포장	
미 탄 면	1. 제1권역 농로포장(창3리, 창2리, 창3리) 2. 제2권역 농로포장(상여골, 회동2리, 마하리) 3. 제3권역 농로포장(성마령) 4. 회동2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5. 평안1리 소교량 가설공사 6. 백운도수로 설치 7. '93 광산지역개발 (이월)	
방 립 면	1. 제1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운교1리, 방림1리) 2. 제2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운교2리) 3. 제3권역 마을길 포장공사(계촌6리, 계촌3리) 4. 제4권역 마을길 포장공사(계촌4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5. 방림5리 배수로 설치공사 6.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방림4리) 7. 계촌교 가설 8. 방림 - 계촌 - 둔내간 군도 9. 방림 - 계촌간 군도 확포장(이월) 10. 평창관문정비(이월)	
대 화 면	1. 대화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 대화5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 대화6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 대화8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 상안미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6. 상안미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7. 쓰레기소각로 시설공사 8. 상안미2리 도수로 설치 9. 상안미제 정비 10. 하안미 - 백옥포간 군도 확포장 11. 대화 정주권개발사업 12. 도시기반시설확충 13. 하안미 - 백옥포간 군도(이월) 14. 대화 상수도 배수지정비	
봉 평 면	1. 제1권역 마을길포장공사(원길1리,덕거1리) 2. 제2권역 마을길포장공사(평촌1리,원길2리) 3. 제3권역 마을길포장공사(홍정리) 4. 봉평 소도읍 정비 (이월) 5. 효석공원조성사업(이월)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용 평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장평2리, 재산3리) 2. 제2권역 마을길 포장공사(도사리, 이목정리) 3. 제3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재산2리, 노동, 속사1리) 4. 제4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장평1리, 백옥포1리) 5. 제5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용전리, 속사2리) 6. 재해취약지구 정비 7. 금당 - 궁항간 농어촌 도로 8. 고속도로 박스 확장공사 9. 속사1리 소화천 정비 	
진 부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탑동 두일2리 마을길 포장공사 2. 마평 1리 신기리 마을길 포장공사 3. 상월오개1리 마을길 포장공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4. 간평2리 마을길 포장공사 5. 상월오개리 '93수해복구 6. 송정2리 '93수해복구 7. 간평리 '93수해복구 8. 진부 오수처리장 9. 거문 - 하진부간 군도(이월) 10. 월정 취수보 설치공사 11. 공동퇴비제조장시설 (이월)	
도 암 면	1. 제1권역 수해복구(횡계2리) 2. 제2권역 수해복구(횡계2리, 횡계5리) 3. 제3권역 수해복구(차항 2리) 4. 제4권역 수해복구(수하, 용산2리, 유천2리) 5. 제5권역 수해복구(유천3, 병내리) 6. 제6권역 수해복구(용산2리, 횡계2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7. 간이급수시설수해복구공사(횡계5리, 횡계6리 차항2리)	
	8. 횡계5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9. 횡계7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10. 제1권역 마을길 포장공사(유천3리, 병내리)	
	11. 제2권역 마을길포장공사(차항1리, 차항2리)	
	12. 제3권역 마을길포장공사(횡계3리, 횡계5리)	
	13. 횡계8리 소교량 가설('93 수해복구)	
	14. 용산1리 소교량 가설 ('93 수해복구)	
	15. 차항2리 소교량 가설 ('93 수해복구)	
	16. 용산2, 병내 암거('93 수해복구)	
	17. 용산1리 석축 ('93 수해복구)	
	18. 수하1.2리 석축('93 수해복구)	
	19. 수하, 용산2리 석축('93 수해복구 들맹이, 오목)	
	20. 횡계5리 제방('93. 수해복구 들맹이, 오목)	
	21. " ('93 수해복구 , 버들, 대밭)	
	22. 횡계3리 제방('93 수해복구)	
	23. 횡계2리 제방('93 수해복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24.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병내리) 25. 수하 군도 수해복구공사 26. 병내리 수해 복구공사 27. 횡계2리 수해복구공사 28. 차항리도 수해복구공사 29. 용산리도 수해복구공사 30. 오대천제 수해복구공사 31. 횡계제 수해복구공사 32. 용산 -횡계간농어촌도로 33. 도암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34. 용평리조트 진입로 개설사업 35. 국제트랜스 산림복구 상황 36. 횡계진입로정비 (이월) 37. 횡계교 가설 38. 송천고수부지 수해복구(명시) 39. 횡계오수처리장 수해복구 40. 청과물 유통시설 설치(이월)	

주요사업장사후관리및운영사항확인대상사업(2)

○ 공 보 설 소 관

1. 비지정 관광지 관리
2. 문화회관 신축 상황
3. 평창도서관운영상황

○ 사회진흥과 소관

1. 노르딕 경기장 시설
2. 복지회관 관리및 운영
3. 평창종합운동장및 관리상황(주변피해대책)

○ 환경보호과소관

1. 평창위생처리장 관리
2. 송어양식장 오수방지 시설(1000㎡이상)
3. 오수처리장 운영
4. 쓰레기 처리장

○ 산 업 과 소 관

1. 백옥포 메밀 가공공장
2. 농산물 직판장 운영
3. 성장작목 단지 운영
4. 진부약초 가공공장
5. 위탁영농회사 운영
6. 농산물 건조장 설치
7.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설치

○ 축산과소관

1.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2.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 지원
3. 톱밥 발효우사설치

○ 지역경제과소관

1. 평창농공단지 관리및 가동
2. 주차장 관리

○ 산림과소관

1. 산림훼손지구 복구
2. 솔잎혹파리 방제사업('93)
3. 봉평 톱밥 생산공장 운영
4. 임도시설 사후관리

○ 농촌지도소소관

1.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 비가림 재배

○ 도시과소관

1. 송정택지조성지구 추진사항
2. 상수도 관리및 운영 (수질 검사, 누수)

○ 건설과소관

- 1 '93경지정리추진

'94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평 창 군 의 회

목 차

<input type="checkbox"/>	확 인 개 요	75
<input type="checkbox"/>	잘 된 점	77
<input type="checkbox"/>	미흡했던 점	77
<input type="checkbox"/>	수 범 사 례	78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	79
	가. 확인사업장 현황	79
	나. 사업장별 확인결과	80
	다. 기 타 사 항	96
<input type="checkbox"/>	주민과의 대화결과	97
	가. 대 화 결 과	97
	나. 읍면별 대화요지	98
<input type="checkbox"/>	읍.면 건의사항	102

'94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 확인개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94.5.23 ~ 6.1 (10일간)
- 대상사업 : '93.'94군정주요사업 및 '93수해복구사업 142건
(주요사업장 111, 사후관리사업 31)
- 확 인 반 : 1개반 11명 (의원8, 사무과직원3)
 - . 총 팔 : 의 장
 - . 반 원 : 부의장, 이치옥, 이상훈,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
 - . 사무보조: 전문위원 신교선, 의사계장 함경호, 행정7급 서홍수
- 주요내용
 -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상황
 -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출 분석 군정에 반영
 - .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
 -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획득
 - .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마련 민의수렴

총 평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결과 부실공사방지 원년을 맞아 사업장별 공사 감독 확행으로 원만한 사업시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발주 및 시공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기 추진사업장의 사후관리 및 미온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사업시행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는등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선정 및 추진면에선

- 사업시행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발생 지역주민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어 이의 조기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음.

※ 봉평 소도읍가꾸기, 황계진입로 정비, 병내리 화훼단지조성, 황계교가설,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미탄굴골농로포장등

- 다수 사업이 발주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우기에 접하고 있어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이 요구됨.

※ 월정상수도 취수보, 황계교가설, 임하교가설등

- '93 이월사업중 수해복구사업은 우기이전 추진하여야 하나, '94.6월 현재 30천중 19건이 시공중에 있어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예산편성 및 운영면에선

- 소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판단미흡으로 시행중 예산부족등의 문제점이 대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금후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음.

※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봉평소도읍정비등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미편성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편여론이 대두 개선이 요구됨.

※ 복지회관(4개소), 쓰레기 매립장관리등

□ 잘 된 점

- 도로포장등은 예년에 비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 공사방지를 위한 시공자의 의식이 현격히 개선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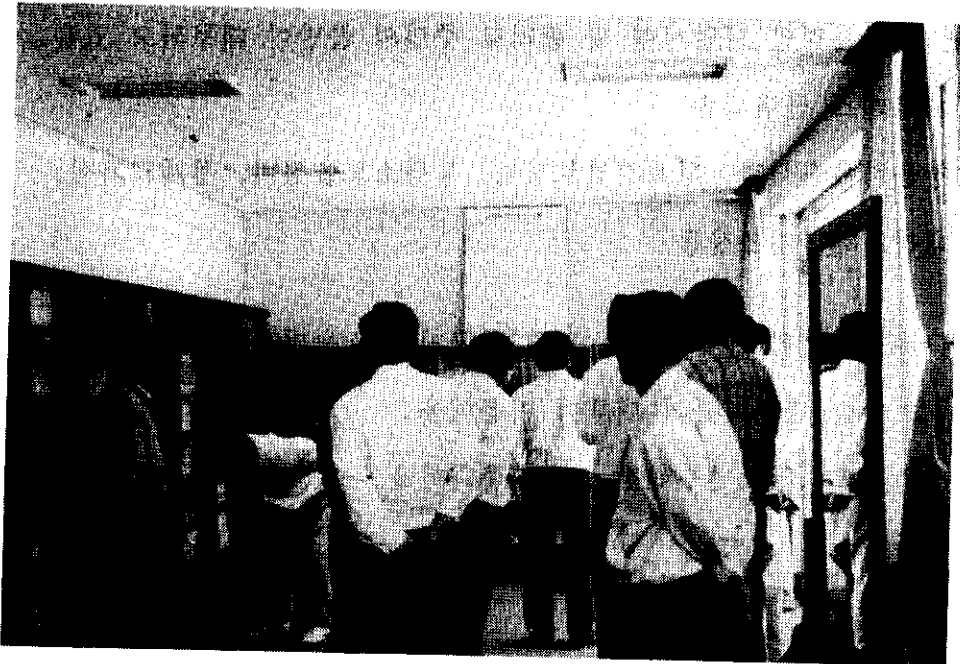
□ 미흡했던 점

- '93이월수해복구사업 시행 지연으로 우기로 인한 수해피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의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사업선정시 사전검토 미흡으로 시행중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장이 발생 사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
 - 하진부 5리~상진부3리 인도 설치, 속사1리 소하천 정비등
- 국,도비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미흡 재원확보등을 이유로 수년째 미온적인 사업시행 및 관리로 주민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음.
 - 국제트랜스 산림훼손
 - 평창문화예술회관, 횡계진입로정비, 봉평소도읍정비, 횡계교가설, 병내리화훼단지조성등
- 지역단위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 인근지역 소득자원개발 및 이용시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미흡했음.
 - 휘닉스파크 ,청소년수련장 , 봉평문화마을, 오대산국립공원, 이승복 유적단지등

□ 수범사례

○ 용평면 복지회관 운영개선

- 용평면은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와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도시 예식장을 방문 혼례용품의 지원을 받아 일반 시중예식장 수준의 혼례용품 비치로 이용자 편의 제공에 솔선하고 있으며,
- 혼례용품 비치: 드레스 23벌, 한복 16벌, 목걸이 2조, 화관7개, 비녀2개, 면사포 3개, 쪽도리 2개, 귀걸이 20조, 장갑 22켢레)
- 도서실 운영및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상근시켜 도서대여와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음
- . 도 서 : 교양도서 비치 3,000 여권
- . 민원처리 : 주민등록등초본외 58건 (주민등초본 16, 토지대장등본 발급5, 주민등록전출입 4, 지적도발급 4 , 기타 6종43건)



복지회관 장서 비치

□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

가. 확인사업장 현황

○ 확인사업장수 : 대상사업 142건중 69개사업

- '93사업 : 22 , '94사업 : 47

구 분 읍면별	접 수			확 인 일 자	비 고
	계	'93	'94		
8 읍면	69	22	47	8 일	
평 창 읍	11	2	9	'93.5. 24	
미 탄 면	8		8	5. 23	
방 립 면	7	1	6	5. 25	
대 화 면	4	1	3	5. 26	
봉 평 면	7	1	6	5. 27	
용 평 면	10	3	7	5. 30	
진 부 면	9	3	6	5. 31	
도 암 면	13	11	2	6. 1	

나. 사업장별 확인결과


【 평 창 읍 】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평창군 종합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됨 - 조정, 인도등 잡초및 훼손부분보완 - 관리자 미상근으로 시설물 관리 소홀 ○ 우기대비 주변 농경지에 대한 매몰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추진 필요 	
평창군종합문화 예술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사업비 확보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시행 ○ 면밀한 사업검토로 사업계획 변경요인 사전 제거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시행기간, 사업규모, 예산확보 방안등 	
임하교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 우기로 인한 수해피해예방 대책강구 필요 	
후평 - 계장간 농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노면 노후로 통행불편, 보수가 요망됨 	
평창상수도 확장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지 성토법면 균열로 우기시 붕괴위험 내재, 사전방지대책 강구 필요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평창군위생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용수 확보 대책 수립 추진 - 예비용수 확보 	
평창농공단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필요 ○ 농공단지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파악지원 방안강구 < 문제점 > ○ 기능인력 및 공업용수 확보 지남 ※ 전기요금 미납과 시설노후로 용수공급 중단 ○ 회원업체 미가동으로 가동업체 피해심각 - 관리비 과다지출로 원가상승 요인 ○ 근로자 아파트 미완공으로 인한 무주택 근로자 입주 불능, 조기완공 시급 	
평창시가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영진상회부지 미활용으로 주민불만 대두 ○ 주차장 이용으로 교통장애 초래, 조속 재정비 필요 	
천변리 강변 주차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및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시설을 위한 위치로 적합 적극검토 추진이 요망됨 	
평창강 하상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부지밀 자생 버드나무로 인한 재해우려 조기 정비필요 	
상리교 가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지연으로 우기시 수해피해예상, 시행전 피해방지 대책 수립 추진필요 	

【 미 탄 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미탄 복지회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주민이용 불편, 이에대한 대책 강구 미흡 - 예산확보등을 이유로 훼손부분 미보수 지역주민 불만 ○ 목욕탕 시설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진단, 쾌적한 이용시설로 개선 필요 	
평안1리 굴골 농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선정시 사업효과 판단 미흡으로 예산운영 부적정 초래 - 포장지역 수해주민 전무 및 경작농지 소수 (67천평) ※ 실경작 1,000여명으로 확인 ○ 세천에 설치한 토관(직경 1m) 협소로 수해 유발우려 ⇒ 박스설치가 타당 - 토관 양쪽 부분 축대등 마감 부실 	
미탄 상수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 누수로 유지비 과다 및 정전시 급수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 호소 - 관로교체등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기대책 마련 시급 	

사업장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회동리 농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미설치로 사고유발 우려, 보완이 요구됨 	
마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 설치 부적정으로 차량소통 지난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 - 토관등 설치로 요철 마감이 필요 ⇒현노면에  U자형 배수로 설치 	
영월댐 건설과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댐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피해 의식이 팽배, 관 불신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대한 주민홍보 시급 (지역개발 제외에 대한 피해 거론) - 사업시행 결정여부, 착공시기, 수몰지역 등 주민이 이해되도록 실상 홍보 	
도수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년 서천경지정리지구시 도수로 미정비로 용수공급 지난,이의대책이 요구됨 	
군도 낙석방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탄 - 기화간 터널 잦은 낙석으로 사고위험 내재 조속한 낙석방지 시설이 요망됨 	

【 방 립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p>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방림4리)</p>	<p>○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 보급이 요구됨</p>	
<p>계촌복지회관</p>	<p>○ 목욕탕시설 (욕조설치, 기구등) 불합리 이용 주민불편, 시설 개선이 요구됨 ○ 주민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활성화대책 장구등 적극적인 운영 방안 개선이 요망됨</p>	
<p>계촌교 가설공사</p>	<p>○ 우기전 시공으로 수해피해예방 및 피해대책 장구 필요</p>	
<p>계 촌 1 교 가설공사</p>	<p>○ 교명주가 분리설치되어 충격시 추락우려가 있음.</p>	

【 대 화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p>하안미 - 가평 - 백옥포간 군도 확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행자 및 시공자의 특별한 대책 마련추진 - 공기내 시공 및 주변 민원방지 철저 ○ 하안미 지역군도 진입로(시멘트 포장)는 주민이용도를 고려, 선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바람직 - 노폭협소 및 노면과다 훼손 ○ 재원절감 차원에서 편입용지 매입후 년차 시공검토가 바람직 ○ 년차 사업으로 전체 설계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타당 - 연속된 이월시공으로 단일업체 특혜부여 계기가 되고 부실시공이 우려됨. 	

【 봉 평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봉평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 지원 방안강구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필요 - 연료비 부족, 시설훼손 보수, 이용비품(드레스등) 구입등 	
봉평소도읍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전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었어야 하였으나 행정절차 미숙으로 시행에 많은 문제야기가 예상(가옥철거, 도로개설등) ○ 주민협조에 비해 행정지원이 소극적임,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지원요구 6억원에 대하여 2억2천 확보 ○ 철거 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휘닉스 파크개발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닉스 파크개발과 관련 봉평면 지역발전 과 주민소득을 위한 대책 수립추진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온적인 대응태세로 지역주민의 관불신 대두 ※ 숙박시설, 민박가구육성, 주차시설, 특산물판매시설 및 물품수급방안등 시설계획수립 추진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발과 관련된 봉평시가지 우회도로 조기 추진 ○ 시설내 방류 우수처리시설 완벽시공 지도 ○ 인근 관광지와 연계 지역발전방안 강구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장, 이승복기념관, 오대산 국립공원등 ○ 개발과 관련 인근주민 피해예방 대책수립 시행(시공 감독, 토사유출및 흙탕물방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치림, 마을운치림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 추진 시급 (회생불가) 	
가산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가터와 연계된 노후교량 개선으로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비지정 관광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및 이동시설운영강화 필요 ○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관리철저로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장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쓰레기 매립장	○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시급	
보래령 도로개설	○ 조기 도로개설을 위한 대책수립 추진이 요망 됨 . - 지역주민이 누차 건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 대두	

【 용 평 면 】

사업장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용평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됨. - 혼인 적령 인구감소로 이용실적 저조 ○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독서실 및 강서 비치 - 혼례용품 기증등 충분한 상비용품 보유로 이용자 편의증대 - 민원접수 창구 활용으로 민원인 불편해소에 솔선 	
용평상수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보급율을 확대(현11%)할 수 있는 방안강구 ○ 기존 간이상수도 처리문제 면밀히 검토 -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 시행 ○ 상수도 수질관리 부실 주민여론대두 -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 	
장평 - 도사간 임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대비 사태방지 대책 수립 추진 ○ 토사방지 초근류 보완식재 필요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이목정 농산물 직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소수, 품질관리부실, 적자발생등의 사유를 심층 분석 개선시급 ○ 양분판매로 판촉의식 미흡, 시설 운영자 및 군관계부서관심 제고 필요 - 지나는 휴게소 →쉬어가는 휴게소로 - 종사원 근무시간 조정 	
쓰레기 매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시행으로 매립량 감소 적극 추진 ○ 쓰레기 감량화 추진지도 및 홍보강화 필요 	
고인들 경지정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마무리 철저히 민원발생 방지 ○ 농경지 보호 제방시설 우기시 방지대책 마련 필요 	
금당 - 궁항간 군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 추진 ○ 감독관 상주지도 및 감독철저히 민원발생 방지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용평 메밀가공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을 전제로 한 상품 생산 및 판매망 확충등 관계기관의 관심제고 필요 	
청소년 수련장 건설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정비 및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발전방안 강구 추진 	

【 진 부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공동퇴비제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비지원등 감안,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업계획에 의한 정실시공 지도감독 필요 	
월정상수도 취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지연으로 수해피해우려 우기전 준공토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거문 - 하진부간 군도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현장지도감독 필요 ○ 양여금 교부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 일괄매입 및 총가입찰에 의한 사업 시행 ○ 도로확포장으로 거문리2반 일부주민이용 교량 미설치, 조기설치 요망 	<p>※관련주민현지 진정사항</p>
송정지구 택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한 마무리 대책 수립 추진 ○ 분양저조에 따른 조기분양 대책및 홍보방안 강구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진부상수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방지 대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폐수 투기행위 단속 강화가 요구됨 ○ 배수지 빗물 차단시설 설치 필요 ○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조기포장 필요 ○ 송정택지조성으로 급수 부족예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장이 요구됨 	
진부 고수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피해에 대비한 사전검토로 조기시행이 요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편 제방 수해피해 고려 	

【 도 암 면 】

사 업 장 명	확 인 요 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 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적 저조로 사업목적 달성 부실 - 홍보강화로 스스로 찾는 판로망 구축 - 관계기관 관심제고 대두 	
횡계5리 침수가구 이주(수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시일내 관계부서간 협의 이주대책추진 - 부지확보. 이주가구 확정등 ○ 영세침수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임대주택건립 추진등의 방안모색 필요 	
대관령 레포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단 방치로 미관훼손, 조속공사 재계 방안 강구 	
횡계진입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성수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 	
횡계상수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대책 수립 - 배수지 확장 (현재 1,000톤) ○ 노후관교체 및 누수탐사 실시 필요로 운영비 절감방안 강구가 요구됨 	

사업장명	확인요지(개선·보완사항중심)	비고
병내리 화훼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참여농가 8가구) 	
횡계7리 교량가설 (수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폭이 하폭보다 협소 수해 재피해가 우려됨. ○ 완벽한 공사실시로 수해로 인한 재피해 방지가 요구됨 	
횡계고수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높이가 하폭에 비하여 높음, 유량예측을 통한 충분한 하폭 확보가 요구됨 ○ 수해에 대비 우기이전 적극추진 	
횡계5리 교량가설 (수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이전 마무리 및 주변정리철저로 수해방지 필요 	
횡계5리 소하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거주변 찰쌓기 미실시로 수해우려 내재 - 보완시공 필요 	

다. 기타사항

- 관내 국도중 위험지구를 중점진단 종합검토한 자료에 의거 의회차원에서 관계 기관을 방문 적극 지원을 요청할수 있는 기본 자료를 작성 제출요망
- 농촌도로 (마을안길, 수해복구등) 설계시 위치별로 시공단가 적용에 차이가 많음 , '94사업장별로(군 및 읍면) 설계현황을 분석 제출요망 (서식 별첨)
- 속사지구 휴게소건축 농지전용허가와 관련 지역주민여론 대두, 이와 관련한 경위와 향후대책 제출요망
- 봉평소도읍정비 국,도비지원 요청현황 및 경위와 관련 문서사본 첨부 제출요망
- 읍면별 시가지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체계적인 하수처리 대책마련등의 향후 계획

(도로포장 단가 제출서식)

(단위:천원,m)

위 치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m'당 단가	기타 참고 사항	비고
읍.면	리		길이	폭				

□ 주민과의 대화결과

가. 대 화 결 과

읍 면 별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대화결과(건수)	비 고
계	7일	7 개소	85	32	
평창읍	5. 24	선홍식당	15	8	
미탄면	5. 23	실비식당	10	2	
방림면	5. 25	거기매운탕	10	6	
대화면	5. 26	백조막국수	9		
봉평면	5. 27	한 성 관	10		
용평면	5. 30	이화식당	9	2	
진부면	6. 1	부일식당	10	7	
도암면	6. 2	바람부리산채회관	12	7	

나. 읍면별 대화요지

읍, 면 별	대 화 자 (건의및질문자)	대 화 요 지	비 고
평 장 읍	김 원 달 (조동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개량 및 농가주택물량 지원확대 · 농촌주택 취락구조개선사업비 지원 	
	박 필 수 (평창영농후계자 협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상설직판장 개설사업비 지원 · 영농후계자 자금지원 확대 요망 · 평창우회도로 개설에 대비 향동리 진입로 개량 	
	이 영 서 (주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변 개나리 식재, 화단 정비시등 교통안전고려 추진 	
	조 귀 자 (평창읍 부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평 ~ 다수간 농촌도로 조기 보수 요망 	
	이 주 성 (평창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금 중단으로 와해우려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읍, 면 별	대 화 자 (건의및질문자)	대 화 요 지	비 고
미 탄 면	하 천 득 (미탄면 부녀회장)	. 창리천 제방 및 수질오염 개선 적극 추진	
	이 한 국 (미탄 양주장 사장)	. 지역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요망	
방 립 면	황 보 한 (운교 1리)	. 솔잎혹파리 피해목 조기벌채로 자원 활용및 산주 소득도모 . 운교 1리 ~ 계촌간 군도주변 소하천 정비 요망	
	박 중 근 (계촌리)	. 계촌저수지 건설과 연계 동지역 하류 농지 82ha중 미정리 전 42ha 조기 경지정리 요망 . 경지정리 지구 소교량 설치 요망 . 계촌 주차장 포장 마무리 요망	
	김 창 기 (운교1리)	. 방림3리 2반 42번 노면포장 마무리 및 낙석방지 시설 요망	

읍, 면 별	대 화 자 (건의및질문자)	대 화 요 지	비 고
용 평 면	최 명 달 (속사2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개발 적극 추진 요망 . 냉해피해 농가 보상문제 적극 검토 추진 요망 	
진 부 면	박 기 서 (하진부 7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진부 2리 밭 정리시 나온 돌 정리 할수 있도록 협조 요망 	
	김 중 석 (이장협의회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보도블럭 일제정비 요망 	
	홍 형 욱 (번영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 도로협소 등으로 조기 출동지난 송정택지지구로 이전 요망 . 교수부지 우기이전 마무리 요망 . 관내 군도 조기 확포장 마무리 요망 . 화외리 소교량 가설 요망 . 거문리 2반 교량가설 요망 	

읍, 면 별	대 화 자 (건의및질문자)	대 화 요 지	비 고
도 압 면	김 광 기 (속사2리)	.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시설 요망	
	오 규 명 (번영회장)	. 도시계획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요망 . 도암호 주변 적극개발 관광객 유치 기본시설 적극 추진 요망 . 영동고속도로 횡계 인터체인지 설치 요망 . 복지회관 설치요망 . 축산폐수로 인한 상수원 보호요망	
	최 임 승 (바르게살기협의 회장)	. 유천출장소 울타리 마무리 요망 . 유천 경유도로 (지방도) 협소로 사고 빈발 갓길포장 요망	

□ 읍.면 건의사항

(단위: m, 천원)

읍면별	사업명	건의요지	사업규모		비고
			사업량	사업비	
평창읍	·후평~계장간농어촌 도로 보수	· 도로노면 심히 훼손 차량 및 주민 통행불편 초래	2,200	50,000	
	· 취락구조개선마을 진입로 포장	· 2개리 50여 가구의 진입로 미포장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초래	400	35,000	
	· 평창시가지 주차장 확보	· 차량증가로 시가지 주차장소 협소	500평	75,000	
방림면	· 운교리 폐국도 포장 사업	· 방림 ~안흥간 42번국도 확포장으로 노선변경 폐국도 관리 소홀			
	· 소교량 교량가설 사업	· 주민교통 불편 및 농산물 반출 지남	80 (3개소)	120,000 (3개소)	
	· 계촌 주차장 포장사업	· 계촌지역 차량증가로 인한 불법 주차차로 교통 장애 및 사고 우려	150	200,000	

읍면별	사 업 명	건 의 요 지	사 업 규 모		비 고
			사업량	사업비	
	· 방림지역 상수도 사업	· 간이상수도 이용으로 한해시 수도물 공급지연 및 소량으로 주민불편 초래	500T/D	400,000	수로원 배치 1명 중장비 월2회 사용
	· 운교3리~문재간 구국도 보수요청	· 42번 국도확포장 및 노선 변경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교통 불편	10km		
	· 방림1리 지역 하천제방 편입 부지 보상	· 수해복구공사 제방편입 부지 보상 미실시로 민원 발생	100평	15,000	
대화면	· 평창문화체육관 건립사업비지원 · 수원상류지역 하수관로 연장 시설 지원	· 확보예산 부족으로 사업 착공 지난 · 수원상류지역 100여가구 집단 마을위치로 생활 하수 하천 직유입으로 수질오염	500	80,000	

읍면별	사 업 명	건 의 요 지	사 업 규 모		비 고
			사업량	사업비	
봉평면	·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	· 통과 교통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장애 초래	2,000	2,150,000	
	· 주차장 설치사업	· 주차공간 미확보	4,890㎡	100,000	
	· 도시계획의 부분 수정	· 도시계획상 용도상이 용도변경 및 확대		100,000	
	· 가산공원조성 마무리	· 공원내 건축물 신축 및 미관저해 가옥 철거	2동	22,000	
	· 보래령 도로개설	· 시·군간 주민교통 및 생활정보 교환			
	· 남안대교 신설 사업	· 노후교량으로 사고위험 과다	110	800,000	
	· 농가주택 물량 증배 요망	· 농가주택개량 희망농가 증가로 물량 부족	350동		
	· 국민주택 배정 요망	·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이주대상가구에 대한 대책	10동		
	· 취락지역 지정	· 휘닉스파크 개발과 관련 면은지구 인구증가 예상		30,000 (용역비)	

읍면별	사 업 명	건 의 요 지	사 업 규 모		비 고
			사업량	사업비	
	.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이상저온(-5℃)으로 농작물 360ha 피해			
도암면	.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	. ART및 다세대 건물신축및 고원도시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노후 누수로 수량부족 현상초래	노후관 교체 2,500상수도 집수정 확장 1000본→5000본	300,000 500,000	
	. 횡계8리 협동교 확장	. 차항천과 횡계시가지 배수구 합류 지점 교량 협소로 장마철 인근주택 및 농경지 피해	교량확장 20→30 제방축조 200	30,000 30,000	
	. 도암면 복지회관 신축	. 관내 예식장이 없음으로 강릉동 외지 이용으로 주민 경비 과다소요	예식장 200평 부대시설 100평	500,000	
	. 횡계7리 교량가설	. 우천시 세월교 범람으로 통행 불가	30	150,000 (교량시설 100,000 토지보상 50,000)	

읍면별	사 업 명	건 의 요 지	사 업 규 모		비 고
			사업량	사업비	
	· 면청사 신축	· 현청사 협소및 노후와 고원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601평	1,323,000	
	· 경광등 설치 (6개소)	· 관광,휴양인파등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6개소	8,000	
	· 행정장비 보강	· 업무용 차량 노후로 오지 마을 운행 불가 및 차량 수리비 과다 소요	1대	15,000	